

● 제320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 9. 14.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I. 결의안 개요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서호연 의원 외 13명 공동발의
- 나. 제안일 : 2023. 9. 14.
- 다. 회부일 : 2023. 9. 14.
- 라. 의안번호 : 1266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까지 서울특별시는 여성 권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성평등 정책을 확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경제포럼에 따른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 GGI)는 '23년 기준 146개국 중 105위에 불과한 실정임..
- 우리나라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최하위임. 더욱이 청소년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질병이 아닌 ‘자살’이며, 그 이유로는 ‘학업 스트레스’와 ‘가정 불화’, ‘아동 학대’ 등이 꼽히고 있음.
- 교권 침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되고 있음. ‘아동 학대 방지’라는 명목으로 교사들은 최소한의 생활 지도와 훈육, 훈계조차 금지되었고, 그 결과 교사의 99%가 학부모와 학생 등 다른 교육환경 구성원으로부터 갑질과 폭력 등의 형태로 교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음.

- 학생들 역시 입시에만 매몰돼 전인적 교육을 받지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학교 폭력에 노출되는 등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음.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 인권 저변을 확대하려 하였으나, 학생의 의무는 배제한 채 권리만 강조하여 교사의 교육권과 충돌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더군다나 사회적 약자로 주목해온 장애인과 노숙인뿐 아니라 체육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인권과 권익향상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제도과 인식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임.
- 특정 계층의 인권과 권익에 초점을 맞추던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인권과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현시점에서 서울특별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신장시키기 위해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3.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4. 이송처

- 서울특별시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 1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취지

- 본 결의안은 서울시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숙인, 체육인, 교사,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인권과 권익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장기 전략 수립과 실행계획 논의를 위한 구축하기 위한 특별위원회<sup>1)</sup> 구성을 제안한 것임.

###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서울시정과 교육 정책은 학생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존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최근 도시의 인권 문제가 국제적인 아젠더로 부각되면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 국가 중심에서 도시정부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민 권리선언과 함께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2012년)하고,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과제를 도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또한, 2012년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
- 한편, 통계청 통계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만 15세)의 삶의 만족도는 67%로 OECD 30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sup>2)</sup>

1)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

2) 통계청,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91면.

- 아동·청소년(9~18세)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웰빙은 부정정서가 2017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에는 악화됨(삶 만족도 6.99→6.80, 우울, 걱정 등 부정 정서는 2.67→2.94).
- 여성 권익 분야에서도 세계경제포럼에 따른 성 격차 지수는 2023년 146개국 중 105위에 머물러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sup>3)</sup>
- 현재 서울은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보육, 돌봄, 노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1인 가구 증가와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다양성을 존중하고, 비차별, 안전 등의 강화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 아울러, 서울시와 교육청은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숙인, 노동자 등의 다양한 계층과 분야별로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와 사업을 각 소관 실·국별로 운용 중임.
- 또한 서울시 감사위원회(인권담당관)·평생교육국(청소년정책과)을 소관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및 복지정책실(장애인복지정책과)을 소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교육청(교육·학예)을 소관하는 교육위원회, 노동정책담당관을 소관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등이 관련 된다는 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요건<sup>4)</sup>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시 인권 관련 조례 소관부서>**

조례	소관부서	위원회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청소년정책과	행정자치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공동주택지원과	주택공간
인권 기본 조례	인권담당관	행정자치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복지정책과	보건복지

3)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2023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2023)」(Insight Report June 2023), 225-226 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복지정책과	보건복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노동정책담당관	기획경제
학생인권 조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교육
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교육
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체육건강예술교육과	교육

### 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희 결과

- 결의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제2항5)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에 긴급 의견 조희 결과, 별다른 의견 없음.
-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위원회별 사전협의는 다음과 같음.
  - 서울시 감사위원회(인권담당관)·평생교육국(청소년정책과)을 소관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및 복지정책실(장애인복지정책과)을 소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사전 협의와 업무지원에 대해 동의하였음.

4)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에도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